법과 기업 연구 제12권 제2호 DOI : 10.35505/sjlb.2022.8.12.2.3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고 재 종*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Ⅲ.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관련한 EU 및 영국의 동향
Ⅳ.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Ⅴ. 맺는 말

국문초록

2020년 1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① 혁신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② 전자금융업종의 통합 및 간소화, ③ 소액후불결제 등 영업범위 확대, ④ 오픈 뱅킹·디지털 청산제도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위의 요소 중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 방법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개괄과 더불어 EU 및 영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도입 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고된 입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임의지정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인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가요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4가지 지정 요건을 일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가 은행과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차등하여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외부청산의무와 관련하여 내부청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핵심어 디지털금융,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전자금융거래법안, 지급결제, 지급계좌, 지급결제서비스, 지급결제서비스지침 II

Ⅰ. 들어가는 말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2020년 12월 10일「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2020년 11월 27일에는 의안번호 2105855로 발의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전자금융거래법안이라 함[1])」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① 혁신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업종(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업 제도)의 도입, ② 전자금융업종의 통합 및 간소화, ③ 소액후불결제 등 영업범위 확대, ④ 오픈 뱅킹·디지털 청산제도화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중 혁신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의 전자금융업자를 미국의 Paypal, 중국의 Alipay 등 글로벌 수준의 지급 플랫폼으로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2]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금융사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빅테크 독과점이 심화되는 동시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도입되더라도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 반면 카드사의 경우는 카드사의 오픈뱅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서 고객들에게 '마이데이터

1) 윤관석 의원 외 11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55)(이하 전자금융거래법안)"(20. 11. 27 발의), 2020. 11. 27.

2) 조동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결제계좌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례",「최신 외국입법정보」통권 149호, 국회도서관, 2020. 12. 8, 1쪽.

3) 한국은행과 은행노조는 '빅테크 특혜로 지방은행 죽이기'라고 반발하여, 민주당 중심 현 개정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다[김현희, "종합지급결제사업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 논의 . . . 카드사 반발",「e대한경제」, 2021. 9. 6,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021521108320818(방문일자 : 2020. 7. 20)].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 여기에서 과연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전자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예탁금을 보호하고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의 증진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청산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5] 굳이 이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도 없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개괄하고, 이를 토대로 EU 및 영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여부, 도입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외부청산제도의 타당성 및 이용자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청산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1.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개념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은행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계좌개설을 통해 자금이체업을 함과 동시에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6] 이 제도의 입법 취지는 그동안 은행 및 비은행 업권이 보유해 온 계좌발급 권한을 여타 금융권 및 비금융회사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여타 금융서비스 또는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수익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7] 만약

4) 김현희, 위의 기사.
5) 양기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쟁점 분석",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2021. 8, 164-165쪽.
6) 윤관석 의원 외 11인, 앞의 전자금융거래법안, 7쪽.
7) 서정호, "종합지급업 도입과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제29권 제23호, 한국금융연구원, 2020. 11.21-12.04, 12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의 편의성, 저렴한 수수료, 비금융혜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객에 대한 지급결제계좌(payment account)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비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선정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안 제2조 제4의 6).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개정안 제36조의 4 제1항). 일정 요건이란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② 2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9)] ③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하려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그 밖에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을 말한다(개정안 제36조의 4 제1항・제2항). 다만,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3.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주요 업무

통상 전자금융업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내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자금이체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및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안 제28조 제1항・제2항). 하지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8)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마이데이터 내지 마이 페이먼트 사업과 비교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마이데이터와 마이 페이먼트 사업의 차이는 전자가 이종 영역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컨버전스 사업인 반면 후자는 지급결제 인프라를 혁신한 간편결제사업의 확대 버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지혜, "쉽게 결제해야 쉽게 산다 . . . 마이페이먼트의 등장", 「전자신문」, 2021. 9. 15, https://m.etnews.com/20210909000266(방문일자 : 2020. 7. 20)].

9) 최소 자본금 기준은 소비자보호 및 결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00억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다[이장준, "[전금법 개정안 명암 핀테크는 되고 카드사는 안된다? 이중잣대 '잡음'", 「더벨」, 2020. 8. 5,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7311428018840101 19 (방문일자 : 2020. 7. 20)].

(1) 지급결제계좌의 개설을 통한 자금이체업

자금이체업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지급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나 자금이체업자에게 개설된 계정에서 다른 계좌나 계정으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금융회사 또는 자금이체업자에 대한 지급인이나 수취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자금이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안 제2조 제2호의 3 및 제12호).[10]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제36조의 5 제1항). 즉,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지급결제계좌(payment account)의 발급 권한을 갖고 현행 은행만 개설할 수 있는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하여 보유·관리할 수 있게 된다.[11] 나아가, 전자금융업자가 이러한 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이러한 허가도 받지 않고 이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지급결제계좌'를 기반으로 한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예금과 대출은 불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12] 물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결제계좌는 기존의 은행의 예금계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예금계좌가 이자지급, 대출, 지급결제 기능을 한다면, 지급결제계좌는 이자지급, 대출 기능은 없으며 지급결제 기능만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3]

---

10)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7가지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9934, 2022.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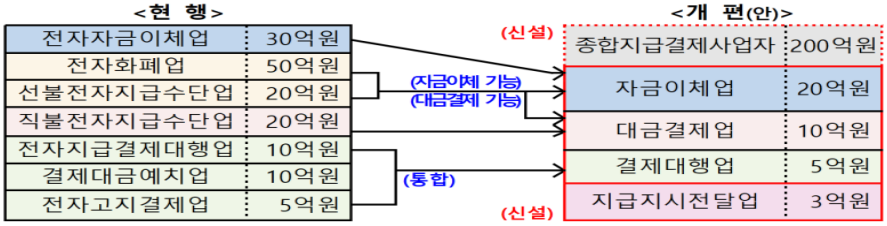

11) 현재 전자금융사업자는 은행과 연계된 계좌만 사용할 수 있다[유미숙(담당과장),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결제계좌에 대한 유럽연합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2020. 12. 8].

12) 조동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결제계좌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5호, 2020. 12. 8, 1쪽.

13) 물론 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2019년 기준 개인의 결제성 예금계좌 보유율이 98%이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신용카드 등 비현금 사용 비중이 73.6%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글로벌 수준의 지급결제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이라고 한다[조동관, 위의 글].

(2) 대금결제업 및 결제대행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안 제28조 제2항 제1호(대금결제업)과 제2호(결제대행업)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안 제36조의 5 제2항).

먼저, 대금결제업이란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그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정산업무 포함)를 말한다(개정안 제2조 제2호의 4).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업무 관련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신용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후불결제업무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불결제업무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대금결제업자가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만, 대금결제업자가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개인결제한도 및 후불결제업무 총 제공한도,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 금지 등의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안 제35조 제5항 및 제6항).

다음으로 결제대행업이란 ① 제3자가 발행한 전자기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가맹점에 지급하는 대금의 관리 업무 또는 ② 이용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개정안 제2조 제2호의 5).

4.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외부청산의무와 정보제공의무

(1)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청산의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이란 '전자지급거래[14]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해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안에 의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지급거래의 빈도,

14)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자지급거래(지급인과 수치인의 거래 상대방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인 전자지급거래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의한 청산을 하도록 하였다(같은 법안 제36조의 9 제1항). 즉,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외부 은행계좌와 연계되는 전자지급거래는 물론 동일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행해진 전자지급거래도 예외없이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게 청산을 하도록 하여 외부청산을 의무화하였다.[15)]

나아가, 개정안 제36조의 8에 의하면, 전자지급거래 청산시스템의 개방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정을 할 때에는 미리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같은 조 제1항). 현재 한국금융결제원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로 허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 제재 등 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16)]

(2)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개정안 제36조의 9 제1항의 청산의무 규정과 더불어 제2항에서는 "위의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8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란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③「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를 말한다. 이에 의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위의 제2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까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라고 한다.[17)]

---

15) 전자금융업자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는 해외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포함된다[양기진, 앞의 글, 164쪽].
16) 이효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결제 안정 해칠 것",「아시아경제」, 2021. 4. 2,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117104061409, 2020. 7. 20.
17)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앞의 전자금융거래법안, 9쪽.

5. 소결

이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누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지정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정 요건은 단지 4가지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건만으로 지정에 무리가 없는지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다. 셋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허가 없이도 자금이체업을, 등록없이도 대금결제업 및 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허가 내지 등록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하여 동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일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하여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Ⅲ.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관련한 EU 및 영국의 동향

1. EU

(1) 서설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종합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논의는 2011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n)가 제정한 2007년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18]에 근거하여 회원국 및 주요 지급결제서비스기관에 모든 시민들이 EU

18) 이 지침은 유럽연합이 출범한 이후 지속된 단일시장에서 상품·인력·서비스·자본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이다[DIRECTIVE 2007/6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7L0064&from=EN (방문일자 : 2020. 7. 20)].

라는 단일 시장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지급결제계좌(Basic payment account)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2015년「지급결제서비스지침 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Ⅱ)(2018년 1월 13일 시행)」[19]에서 은행 등으로 한정된 지급결제사업자를 인터넷, 모바일, 핀테크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20] 즉, PSDⅡ의 시행으로 그동안 은행이 독점하였던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본인의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업자(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AISP)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급지시 서비스 제공업자(Pay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PISP)는 자금이체 내지 결제대행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21] 그 결과 핀테크 기업은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토대로 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구글, 아마존,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강자의 ○○PAY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22]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규정

1) 지급결제사업자의 개념

지급결제서비스지침Ⅱ(PSDⅡ)에는 지급결제사업자(payment service institution, PSI)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 PSP)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유사한 제도로 EU 전역에서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a legal person that has been granted authorisation)을 말한다(PSDⅡ Article 4(4)), 이러한 지급결제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5조가 정하는 요건[23]

---

19)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L2366&from=EN (방문일자 : 2020. 7. 20).

20) https://newsroom.koscom.co.kr/3898, 2022. 7. 20.

21) AISP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가 보유한 하나 이상의 계좌를 집합된 정보 형식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업자를 말하고, PISP는 지급인의 지급개시 요청에 따라 지급인의 은행 등 계좌개설기관으로부터 지급정보를 송수신하고, 수취인 앞으로 지급지시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를 말한다[금융위원회, "[알기 쉬운 핀테크] 금융권 Open API",「보도자료」2019. 2. 22, 6쪽,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3(방문일자 : 2020. 7. 20)].

22) 위의 사이트.

23) 제5조 1.의 신청요건으로 17가지를 정하고 있다. 즉, ① 특히 예상되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유형을 설명하는 운영 프로그램, ② 신청자가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고 비례적인 시스템, 자원 및 절차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최초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예측 예산 계산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③ 지급결제기관이 제7조에 규정된 최초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④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기관에는 제10

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관할기관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물론 관할 당국은 필요한 경우 국가중앙은행 또는 기타 관련 공공기관과 상의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PSDⅡ Article 11(2)).[24] 다음으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는 PSDⅡ Article 1(1)에서 언급된 기관(a body)[25]이나 같은 지침 Article 32(조건)와 33(계정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면제를 받은 자연인이나 법인(natural or legal person)을 말한다(PSDⅡ Aritlce 4(11)). 이러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로는 은행, 지급결제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2) 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

PSDⅡ에 의하면, 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및 그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지급결제거래, 외환거래 서비스, 보관 업무의 실행 및 정보의 저장

조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설명, ⑤ 거버넌스 배치, 통제 메커니즘 및 절차가 비례적이고 적절하며 건전하며 적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의 거버넌스 배치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행정, 위험 관리 및 회계 절차를 포함), ⑥ 제96조에 규정된 지급결제기관의 통보의무를 고려하는 사고 보고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보안 사고 및 보안 관련 고객 불만을 모니터링, 처리 및 추적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⑦ 민감한 결제 데이터에 대한 파일링, 모니터링, 추적 및 액세스를 제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⑧ 중요 운영의 명확한 식별, 효과적인 비상 계획 및 해당 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한 비즈니스 연속성 준비에 대한 설명, ⑨ 성과, 거래 및 사기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에 적용되는 원칙과 정의에 대한 설명, ⑩ 보안 정책 문서에는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상세한 위험 평가와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를 식별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보안 통제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여기에는 중요한 개인 데이터의 부정 사용 및 부정 사용이 포함됨), ⑪ EU지침 2015/849 및 유럽 의회 이사회(1)와 규정(EU) 2015/847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무를 따르는 지급결제기관에 대하여, 신청자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된 내부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⑫ 신청자의 구조 조직에 대한 설명,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과 지점의 의도된 사용과 신청자가 아웃소싱 약정에 대한 설명과 국가 또는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여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 수행하는 오프 사이트 및 현장 점검에 대한 설명, ⑬ 규정(EU) No 575/2013 제4조 제1항(36)의 의미 내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격성 보유자의 신원, 보유물의 규모 및 지급결제기관의 건전하고 신중한 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적합성의 증거, ⑭ 지급결제기관의 홈 회원국이 결정한 지급결제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와 개인, 그리고 관련 있는 경우, 지급결제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활동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신원, 그리고 그들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⑮ 해당되는 경우,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43/EC에 정의된 법정 감사인 및 감사 법인의 신원, ⑯ 신청인의 법적 지위 및 정관, ⑰ 지원자의 본사 주소를 말한다.

24) 위의 신청기관이 부속서 I의 (6)항에서 언급한 지급결제서비스(송금)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본은 2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결제기관이 부속서 I의 (7)에서 언급한 지급결제서비스(결제개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본은 5만 유로 이상(2015년 12월 23일 유럽 연합 공식 저널 L337/63 EN), 지급결제기관이 부속서 I의 (1)에서 (5)까에 언급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2만 50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PSD Article 7).

25)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자국법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은 우체국 지로기관(post office giro institutions), 지급결제기관(payment institutions), 통화당국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지위에서 기능할 수 없을 경우의 ECB와 국가중앙은행(the ECB and national central banks), 공공기관의 지위에서 기능할 수 없는 경우의 회원국가 또는 그 지역기관(Member States or their regional or local authorities)을 말한다[PSDⅡ Article 1(1)].

및 처리의 보장 등 운영 및 그와 밀접한 관련한 부대 서비스의 제공, ② PSD II Article 35조(지급시스템의 접근)를 위반하지 않는 지급시스템의 운영, ③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 이외의 EU 및 국내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활동에의 종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SD II Article 18. 1.).

지급결제사업자가 위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결제거래 전용의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PSD II Article 18. 2.). 다만,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자금(any funds)은 위 지침 2013/36/EU 또는 위 지침 2009/110/EU의 Article 2(2)의 전자화폐(electronic money)[26]에 해당되지 않는다(PSD II Article 18. 3.). 나아가, 지급결제사업자는 부속서 Ⅰ(ANNEX Ⅰ) 4와 5에서 언급한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정 요건[27]을 갖춘 경우 신용공여(grant credit)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PSD II Article 18. 4.). 이 외에 지급결제사업자는 위 지침 2013/36/EU Article 9(신용기관 이외의 개인이나 사업이 공공으로부터 예치금이나 기타 상환 가능한 자금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금지)[28]에 따른 예금이나 그 밖에 상환해야 할 자금을 수취하는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SD II Article 18. 5).

(3) 지급결제계좌 지침

EU는 지급결제계좌 지침(Payment Account Directive, PAD)[29]을 2014년 7월 23일 도입하여 2016년 9월 18일 시행한 것으로 EU 내에 보유하고 있는 지급결제계좌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에 관련된 규정(Chapter 2), 회원국 내에 지급결제계좌 이동(switching)에 관한 규정(Chapter 3 Artilcle 10) 및 소비자의 해외 지급결제계좌 개설(cross-border payment account-opening)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

26) '전자화폐란' 지침 2007/64/EC의 Article 4(5)에서 정의된 지급결제거래의 목적을 위하여 자금의 수령시 발행되는 그리고 전자적 화폐 발행인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수취된 발행인의 청구에 의하여 전자적(자기적인 것 포함)으로 저장된 화폐가치를 말한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9L0110&from=EN, 2022. 7. 20].

27) 다음의 요건이란 ① 신용공여가 부수적이고 전적으로 지급결제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여된 경우, ②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제공에 관한 회원국의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공여되고 Article 11.9.와 Article 28에 따라 이행된 신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③ 그러한 신용은 지급결제거래의 이행을 목적으로 수령되거나 보유된 자금으로 공여될 수 없다. ④ 자급사업자의 자기자본은 항상 감독 당국이 만족할 만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L0036&from=EN, 2022. 7. 20.

29) 위의 사이트.

규정(chapter 3 Article 11)을 두었다.[30] 지급결제계좌(payment account)란 "지급결제거래의 이행 목적으로 한 명 이상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하며(PDS 2 Article 4(12)), 지급결제거래(payment transaction)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채무(underlying obligations))에 관계없이 지급인 자신이나 대리인 또는 수취인에 의하여 자금을 예탁(placing), 송금(transferring) 또는 인출(withdrawing)하는 행위를 말한다(PSD II Article 4(5)). 지급결제계좌와 관련하여 PSDII에 규정한 모든 조항은 소비자의 자금예탁(place funds), 현금인출(withdraw cash)과 제3자와 주고받는 지급결제거래(신용이전 포함)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제한된 계좌는 배제되며, 기존의 계좌는 EU의 모든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틀을 갖춘 지급결제계좌로 전환하거나 지급결제계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다.[31]

(4) 이용자의 보호

EU는 PSDII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시행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32] 즉, EU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금이나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이나 비금융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서비스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PSDII 제73조의 규정을 두었다. 그 내용은 이용자의 사기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미승인 거래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만약 거래가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PISP)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은행 등 계좌보유기관이 이용자의 손해를 즉시 배상한 후 PISP의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나아가, 추가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지급인과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준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33] 또한 PISP, AISP는 이용자가 명시한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 가능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34] 나아가, 정보 및 자금 이동을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럽금융감독청의

---

30) 위의 사이트.
31) https://www.privatebanking.hsbc.com/about-us/financial-regulations/payment-accounts-directive/, 2022. 7. 20.
3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9. 12, 177/224쪽.
33) PSDII Article 73(Paymen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unauthorised payment transaction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L2366, 2020. 7. 20.
34) PSDII Article 66-67, Recital 32(Conditions for consents), https://gdpr-info.eu/recitals/no-32/(방문일자 2020. 7. 20).

규제기술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에 의하도록 하였다.[35]

2. 영국

(1) 서설

영국의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 PSP)[36]는 그동안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왔다. 하지만, 2013년 금융서비스법(FSBRA)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37]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참가 및 포용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참가방식과 지배구조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38] 이후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인 PSP도 지급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39]에 직접 참가하려면 금융감독기관인 FCA의 권한을 부여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 또는 지급결제기관(payment institution)이어야 하고, 각각의 시스템

---

35) PSD II Article 98(1)(d), RTS Article 30, Recital 24(Applicable to Controllers/Processors Not Established in the Union if Data Subjects Within the Union are Profiled), https://gdpr-info.eu/recitals/no-24/(방문일자 2020. 7. 20)qkdansdlf2k; 이보미, "PSD II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금융브리프」 제29권 8호, 2020. 4.4-4.17, 5쪽.

36) 영국은 금융기관을 크게 3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비금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수시입출예금업무를 담당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서민금융기관(수시입출예금업무), 증권회사(CMA업무), 보험회사(지급결제업무(×))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금융기관은 자체 계정으로 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결제대행 등을 할 수 있다[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30, 443쪽].

37)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은 2014년 4월 1일 금융감독기관(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자회사로 통합되었다. 지급결제서비스의 개시는 2013년 3월부터이며, 완전한 기능 수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이다[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payment systems in the UK(2014.11), p. 15(16), https://www.fca.org.uk/publication/other/psr-cp14-1-cp-a-new-regulatory-framework-for-payment-systems-in-the-uk.pdf (방문일자 : 2020. 7. 20)].

38) PSR은 "Decision on the review into our 'day one' Directions and consultation on the proposed Directions, 2019.3"을 통해 6개의 일반지침(General directive)과 1개의 특별지침(Special Directive)을 발표했으며, PSR과 피규제기관간 관계(GD1), 지급결제시스템 참가(GD2, GD3, SD1), 지배구조(GD4, GD5, GD6)로 구성되었다. 나아가, 간접참가는 영국 지급결제협회(현재는 Pay UK)에서 자율규제하는데, PSR과 협의를 거쳐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Indirect Access Providers, 2016. 9)을 공표하였다[General directions on gener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participants' relationships with the Payment Systems Regulator, access to, and governance of, regulated payment systems(2015. 3. 18) and modified some provisions(2016. 5), psr-general-directions-may-2016.pdf(방문일자 : 2020. 7. 20)].

39)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 및 소액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로는 CHAPS, 후자의 예로는 BACS, Faster Payments Service(FPS), Cheque & Credit(C&C), LINK Scheme 및 Master Card, Visa의 카드결제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125/224;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20. 9),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지급결제 조사자료」, 2020. 9, 86/321쪽].

적격성 요건 기준 충족하여야 하며,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 허용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FCA의 감독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40] 이러한 요건과 권한 부여 절차의 마련으로 신규 참가기관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경쟁이 촉진되었다.[41] 이하 영국의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가 및 지급결제계좌의 발급 및 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비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

1) 참가요건의 완화와 참가방식의 다양화

영국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은 직접참가와 간접참가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42] 종래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PSP)는 간접참가만이 가능하였으나, PSR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43]의 참가에 대한 신청요건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개편함으로써 PSP의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되었다.[44] 또한 2016년 3월부터는 직접참가를 희망하나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도 에그리게이터(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게이트웨이(PSP의 시스템과 중앙 인프라를 연결)를 통한 지급결제 인프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45] 그 결과 2019년 7월 기준 FTS 및 Bacs에 8개의 비은행 PSP(Ebury, Transferwise,

---

40) 영국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PSR, 영란은행, FCA,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등이 있다. 영란은행은 영국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과 인프라 공급기관을 감독하고, FCA는 도소매 금융시장의 모범행동 규제, 같은 시장의 인프라, 영업행위 감독, 상장 당국으로서 권한행사를 하고, PRA는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조합, 보험사, 주요 투자회사(PRA인가회사)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하고, PSR은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운영기관, 인프라 공급기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규제를 한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92/224쪽]

4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25/224쪽.

42) 직접참가(Direct Access) 방식이란 PSP가 영란은행 지급결제의 계좌를 통해 직접 결제하며, 자체적인 기술(게이트웨이)로 중앙 인프라에 참가하는 방식이고, 간접참가(Indirect Access) 방식은 PSP가 대행기관(indirect Access Provider)을 통해 지급결제에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이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66/224쪽].

43)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는 CHAPS는 영란은행, BACS(입금이체 및 출금이체)는 BPSL, FPS(신속자금이체)는 FPSL, C&C(수표 등 청산)는 C&CCC, LINK(ATM)는 LSL, Master와 Visa 카드는 각각 Master Card와 VISA사이었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25/224;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20. 9), 앞의 조사자료, 86/321쪽]

44) 비은행 PSP가 직접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① FCA로붙 권한을 부여받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결제기관이어야 하고, ② 각각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③ 영란은행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을 위한 적격성 기준 충족, ④ FCA의 감독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53/224쪽].

45) 유영선 · 강규희,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2019. 10, 16/48쪽; 이러한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있는 유망 브랜드를 발굴하여 인수 · 투자하는 기업들에서 유래되었다

Ipagoo,[46] CreDec, PrePay Solutions, Equals Group, PayrNet, Modulr, Revoult)가 직접참가를 하게 되었다.[47]

나아가, Pay UK[48]는 대형은행의 간접참가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Indirect Access Providers)을 마련하였다.[49] 이 규범은 5개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Bacs, FPS, CHAPS, C&C, LINK)에 대해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은행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물론 대형은행들은 이 행동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2019년 4월 기준 Barclays, HSBC, Lloyds, RBS, ClearBank, Starling Bank의 6개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이 규범에 서명하였다.[50] 이후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자체평가(self-certification)를 통해 규범의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Pay UK는 동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평가 및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51]

2) 지배구조 개편

CHAPS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2016~2017년에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52] 웹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시도,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서비스 이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다. 나아가, 지급결제서비스 규제기관(PSR)은 2015년 10월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결제 관련 수요자 및 공급자 협의기구인 지급결제전략포럼

[https://brunch.co.kr/@trendlite/155, 2022. 7. 20].

46) 2019. 7 업무정지가 되어 현재 모든 시스템에서 탈퇴된 상태이다.

47)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20. 9), 앞의 조사자료, 125/226-126/226쪽.

48) Pay UK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서 보증기관이 회원이 되어 투표권 및 이사회 임명 동의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Bacs Payment System Ltd(BPSL), Faster Payment system Ltd(레니), Cheque & Credit Clearing Company(C&CCC)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 있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20. 9), 위의 조사자료, 138/226쪽].

49) 이 자발적 행동규범은 지급결제업계(payments industry)가 PSR과 협의하여 개발한 것이다[Code of Conduct for Indirect Access Providers(2015. 8), pp. 3-4, https://www.accesstopaymentsystems.co.uk/sites/default/files/Code%20of%20Conduct%20for%20Indirect%20Access%20Providers%201%200%20(Interim).pdf(방문일자 : 2020. 7. 20)].

50) 종래 4개 기관이었으나, ClearBank와 Starling Bank의 2개가 늘어 현재 6개가 되었다. 새로 참가한 2개 기관은 오픈 API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실시간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136/224쪽].

5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35-136/224쪽.

52) Development forum(FPS, 월 2회), Bacs electronic affiliates Forum(Bacs, 분기), Cheque user Forum (C&C, 수시) 등을 들 수 있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37/224쪽].

(Payment Strategy Forum, FSF)도 설치·운영하기도 하였다(2017년 13월 운영 종료).[53]

(3)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계좌의 발급 및 보유

1) 지급결제계좌 규정

2014년 7월 23일 EU의 지급결제계좌 지침(Payment Accounts Directive, PAD)에 따라 영국 재무부는 2015년 12월 지급결제계좌 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 PAR)을 공표, 2016년 9월 발효하였다.[54] 이 규정에서 금융감독기관(FCA)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주무 부처로,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SR)을 대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좌이동 시스템을 지정기관으로 정하였다.[55]

FCA의 계좌이동 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복적인 지급지시(대량이체, 자동이체 등)를 지급결제계좌간 간편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는 이 지급결제계좌 규정에 따라 직접 계좌이동 서비스(switching service)를 제공하거나 계좌이동을 제공하는 대안적 시스템(alternative switching scheme)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56]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SR)은 지급결제계좌 규정에 따라 대안적 계좌이동 시스템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계좌이동 시스템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다음의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PSR에게 정보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의 요건이란 ① 계좌이동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명백히 이득이 될 것, ② 소비자에게 지급결제계좌 규정 Schedule 3의 2에서 6 외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말 것,[57] ③ 최소한 Schedule 3의 2에서 6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 서비스의 경우에 적용되는 동일한 전체 기간 내에(same overall time) 전환 절차가 완료되도록 보장할 것[58]을 말한다.[59] 또한

53)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36-137/224쪽.

54) FCA, The Payment Accounts Regulations 2015 – Feedback on CP 16/7, Final Handbook changes and finalised guidance, August 2016, p. 6(1.9), https://www.fca.org.uk/publication/policy/ps16-20.pdf(방문일자 : 2020. 7. 20).

55)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89/224쪽

56) PAR Part 3(Switching) 15(Alternative arrangements) (1),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2038/contents/made(방문일자 : 2020. 7. 20).

57) 지급결제계좌 규정 Schedule 3은 인증, 소요시간,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정하고, PSR은 해당 요건의 추가적인 부담 부과 여부를 소비자 의무사항과 수수료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89/224쪽].

58) 이 요건의 충족하기 위해서 PSR은 목표 시간과 서비스 운영 중 이를 초과한 횟수, ② 12영업일 이내 성공적 전환 횟수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89쪽/224쪽].

59) PAR Part 3(Switching) 15(Alternative arrangements)(2),

PSR에게는 지정된 시스템이 지급결제계좌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준법감시 관련하여 신청자 및 지정시스템에 대한 신청/연간 수수료 징수(4 and 5 of Schedule 4), 대체 약정으로 지정된 전환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보 규정(7 of Schedule 4), 지정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지침 제정권(8 of Schedule 4)과 벌칙(9 of Schedule 4) 등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60]

2) 지급결제서비스 관할기관

지급결제서비스 관할기관으로는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CA)과 지급결제서비스 규제기관(PSR)을 들 수 있다. FCA는 은행개혁법(Financial Services(Banking Reform) Act 2013)[61]에 따른 관할기관으로 전자화폐기관, 지급결제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기관들에 대한 영업행위를 규율하게 된다.[62] 다만,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PSR 2017에 따라 PSR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63] 즉, PSR 2017 제61조(ATM 인출 수수료의 정보), 103(지급결제시스템의 접근에 대한 제한 규정의 금지), 104(지정된 시스템의 간접적 접근)와 관련하여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SR 2017 제105(은행계좌의 접근)에 대해서는 FCA와 PSR이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였다.[64]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2038/contents/made(방문일자 : 2020. 7. 20).

60) 4, 5, 7, 8, 9 of Schedule 4(Designation of alternative arrangements etc.),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2038/contents/made, 2022. 7. 20.

61) 이외에도 직접연결·직접결제(Directly Connected Setting Participats DCPs)과 직접연결·간접결제(Directly Connected Non-setting Participants, DCNSPs)방식이 있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166/224쪽].

6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93/224쪽

63) PSR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하는 기관으로 2013년 「은행개혁법」에 근거하여 2014년 4월 영국 금융행위 규제기관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2015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Section 40)[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78/224쪽]. PSR의 권한으로 은행개혁법 Part 5에서 ①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 금지하거나 모범 규정을 설정하는 지침의 제정(같은 법 Section 54), ②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게 운영기준의 제·개정 및 보고 요구(Section 55), ③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게 특정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참가를 허용하도록 요구(Section. 56), ④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수수료 등에 관한 협정의 변경(Section 57), ⑤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운영이익의 처분 요구(Section 58),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경쟁제한 행위의 조사 권한 등(Section 59-67)으로 정하고 있다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3/33/contents/enacted, 2022. 7. 20].

64)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7/752/contents/made, 2022. 7. 20.

3)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요건과 예외

FCA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거나 등록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 또는 접근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① 지급결제계좌 서비스에 대한 접근 허용을 균형있고(proporationate), 객관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② 결제 위험, 운영 위험 또는 비즈니스 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 또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금융·운영상 안정성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참가나 접근의 방지(prevent), 제한(restrict) 및 금지(inhibit)를 하지 말아야 하며, ③ 위 ①②의 규정은 법인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하여야 하고, 마지막 ④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또는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거나 접근하도록 규정하는 규칙이나 조건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또는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위의 금지[65]를 정하고 있다(PSR2017 제103).

다만, 위의 참가 및 제한 요건은 지정시스템(designated system)이나 동일한 그룹에 속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만으로 구성된 지급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SR2017 제102조). 여기서 지정시스템(designated system)이란 결제완결성 규칙(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66] 9(1)의 해석 (6)에서 열거된 시스템을 말하며(PSR 2017 제2(1)),[67]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①권한을 부여받은 지급결제기관, ②소액지급결제기관, ③ 등록된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자, ④ EEA[68]의 권한

---

65) 일정한 행위란 ①다른 지급결제시스템에 효율적인 참여 제한, ②(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음의 자 사이에서의 차별(ⓐ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받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 ⓑ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자의 권리, 의무 또는 자격(entitlement)와 관련한 서로 다른 등록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 ③제도적 지위를 기반으로 제한의 부과를 말한다.

66) 결제완결성규정(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은 자국 법률에 반영하고 지급결제 및 증권결제 시스템을 통해 유효하게 이루어진 거래를 「파산법」의 특정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래가 취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하였으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 중의 1인이 지급불이행 상태에 이르는 경우 「결제완결성 규정」이 「파산법」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박이락,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금융시스템 리뷰」,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4. 7, 145쪽].

67) 지정된 시스템이란 ① 본 규정의 목적상 효력기간 동안 지정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시스템으로 선언된 시스템, ② 2019년 금융시장 및 파산(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개정 및 경과규정)(EU 탈퇴) 규정 제4부(Part 4)에 의하여 임시로 지정된 시스템을 말한다[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 2(Interpretation), https://www.shearman.com/-/media/Files/Services/Brexit-Legislation/Rebrand/Publication-Version---SFR---1---25022019.pdf?la=en&hash=2C5F6AE9CF8B81989E3F0788B5B8C25BA8129187(방문일자 : 2020. 7. 20)].

68) EEA(European Economic Area)란 EU의 단일시장을 말하며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스위스는 EU나 EEA 회원국은 아니지만, 단일시장의 일부에 포함된다. 이는 영국에서 살고 일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https://www.gov.uk/eu-eea, 2022. 7. 20].

을 부여받은 지급결제기관, ⑤ EEA 등록된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자, ⑥ 해당 지점에서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가 전자화폐의 발행과 연계되는 전자화폐기관[69](본사가 EEA외부에 있는 기관의 EEA에 위치한 지점을 포함), 권한을 부여받은 지급결제기관(소유모 지급결제기관 및 EEA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포함), ⑦EEA에 위치한 지점을 포함한 신용기관, ⑧ 우체국(the Post Office limited), ⑨ 영국은행,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이외의 EEA 국가의 국가중앙은행(통화 당국의 자격으로 행동하거나 공공성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제외), ⑩ 정부 부서 및 지방 당국(공공성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제외)를 말한다(PSR2017 2(1)).[70]

4) 지정된 시스템에 대한 간접 참가

지정된 시스템의 간접적 참가 내지 접근이란 지정시스템의 참가자가 아닌 권한을 부여받거나 등록된(authorised or registered)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즉 대행은행(sponsor banks) 등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Indirect Access Providers: IAPs)이 지정시스템을 통해 이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말한다.[71] 이와 관련하여 PSR 2017 제104조 제1항은 "지정시스템의 참가자는 다른 권한을 부여받거나 등록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시스템을 통해 이체지시의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 비례적, 비차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시스템의 참가자는 위의 요청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다음의 행위란 ① 결제 위험, 운영 위험 또는 비즈니스 위험과 같은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참여자 또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금융 및 운영상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참가 또는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되며, ② 시스템에 대한 참가나 접근과 관련하여 그러한 제공자의 권리, 의무 또는 자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받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이나 서로 다른 등록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③ 제도적 지에 기초한 제한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같은 조 제2항). 만약 참가자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절에 대한 충분한

69) 전자화폐기관이란 EU의 전자화폐지침(E-money Directive 2014)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하며, 영국은 전자화폐규칙과 지급결제서비스 규칙(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and the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에서 정하고 있다[오성근, "영국법제상 결제서비스에 관한 규칙 및 검사·감독-전자화폐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1호, 금융감독원, 2020. 4, 184-185쪽].

70)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7/752/regulation/104/made, 2022. 7. 20.

7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27/224쪽.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72]

5) 은행계좌의 참가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73]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먼저, 이 규정 2(1)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의 (a)에서 (f)에서 언급된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74]와 그러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로서 권한을 부여받거나 등록 신청자에게 지급결제계좌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며 비례적인 기준에 따라 참가 내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PSR2017 제105(1)(a)). 위 제(a)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접근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신용기관이 적용하는 기준을 그 문의에 대한 응답을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항(b)). 또한 이러한 기준이 위 (a)항의 준수를 보장하도록 해당 약정(arrangement)을 유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c)).

위의 제(1)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된 지급결제계좌 서비스에 대한 접근는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범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만약 위 제(1)항 제(a)목에서 언급된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요구를 거절하거나 그러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그러한 서비스의 참가 내지 접근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신용기관은 위의 사실을 FCA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나아가, 이러한 통보는 ① 참가 내지 접근 거부 또는 철회에 대한 적절한 이유(duly motivated reason)를 포함하여야 하고, ② 정보의 포함과 더불어 참가 내지 접근 거부 또는 철회 이후의 적절한 기간 내에 FCA가 지시한 바에 따른 그러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 만약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이 그러한 통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FCA에 표시하지 않는 한 FCA는 위 제4항에서 받은 이유를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75]

---

72)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7/752/regulation/104/made, 2022. 7. 20.

73) 자본요건규칙(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Article 4(definitions) 1(1)에 따라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은 공공기관에서 예금 또는 기타 상환 가능한 자금을 받아 자신의 계정에 신용을 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https://www.eba.europa.eu/regulation-and-policy/single-rulebook/interactive-single-rulebook/504, 2022. 7. 20].

74) (a) 권한을 부여받은 지급결제기관, (b) 소액지급결제기관, (c) 등록된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자, (d) EEA내 권한을 부여받은 지급결제기관,(e) EEA 등록된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자, (f) 해당 지점에서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가 전자화폐의 발행과 연계되는 전자화폐기관을 말한다[PSR 2017 2(1)].

75)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7/752/regulation/105/made, 2022. 7. 20.

5) 준법감시

PSR 2017 Part 10(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에서는 위 요건의 준수를 위하여 PSR에게 서면에 의한 지침제공권(Reg. 125), 조사수행권(Reg. 135), 벌칙부과권(reg. 127), 미이행사실 및 벌칙 부과 공표권(Reg. 126)의 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76)]

먼저, PSR 2017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은 규제 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침(directions)을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이 지침의 제공 목적은 ① 지침요구사항의 준수, 대상자에 대한 지침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지침요구사항의 미준수에 대한 시정, ③ 지침의 요구사항의 미준수(failure to comply) 또는 지속적인 불이행(non-compliance)의 방지를 위함이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이 지침은 특정 조치의 수행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 모든 규제대상자(every regulated person)와 관련되거나 또는 ⓑ 특정 규제 대상자 또는 특정 규제 대상자들(a specified regulated person or specified regulated persons)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위 ⓐ에 언급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침은 이 장(this part)에서 일반 지침(general direction)이라고 한다(같은 조 제5항). 정보의 제공 규정에서 요구하는 지침은 정보가 필요한 목적과 정보가 제공될 시간을 적절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은 이와 관련한 일반 지침을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7항). PSR 2017 제126조에서는 규제 대상자의 불이행과 제127조에 따른 벌금(penalties)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PSR 2017 제135조는 위의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정보의 공시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준법감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77)]

(4) 이용자의 보호

영국은 개편된 지급결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 등 제3자 서비스 제공기관(Third Party Provider, TPP)이 고객계좌에 접근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도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고객의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표준 설계서를 작성 공개하고, 고객보호를 위한 고객 경험 가이드라인 제정·공표하여 금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78)]

---

76)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87/224쪽.
77)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7/752/regulation/135/made, 2022. 7. 20.

먼저, API 표준 설계서는 지급거래별 기관간 메시지 송수신 절차, API의 기능 및 각 기능별 의무 여부, 서비스 사례 등을 규정하였다. 계좌정보 서비스와 지급지시 서비스의 통신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계좌정보 서비스의 통신 절차로는 ①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업자(ASIP)에 대한 계좌정보서비스 이용 신청, ② AISP의 계좌기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ASPSP)에 대한 계좌접근 요청, ③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ASPSP에 대한 계좌접근 동의, ④ AISP의 ASPSP에 대한 계좌정보 요청의 순서로 계좌정보를 받게 된다. 지급지시 서비스 절차의 경우는 ①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도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계좌접근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자금확인(일부 지급서비스), 지급지시, 동의 및 지급지시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79][80]

다음으로 고객 경험 가이드라인에서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제3자 서비스 제공기관인 TPP와 계좌기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인 ASPSP 간의 동의 요청, 고객 인증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고객은 지급거래 개시후 TPP영역에서 계좌접근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으며, 요청 승인후 ASPSP로 자동으로 연동되어 인증되고, 다시 TPP의 영역에서 거래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ASPSP 영역에서 고객이 신원확인 데이터를 통한 강력한 고객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TPP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TPP가 고객에게 계좌접근에 대한 동의 요청시 제공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AISP의 경우는 고객 동의시 공유되는 정보, 요청정보의 목표, 요청 정보의 기간, TPP의 계좌접근이 만료될 시기, 동의가 허용된 시기를, PISP는 지급거래 규모·통화, 수취인 계좌명(계좌번호 등), 지급거래 근거, 지급계좌 식별정보, 선택한 ASPSP 정보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81]

3. 소결

이상으로 EU와 영국에서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EU나 영국도 우리나라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유사한 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

7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앞의 조사자료, 176/224쪽.
79)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90/224쪽.
80) 이 외에도 자금확인 메시지 통신 절차로 ① 자금확인 동의, ② 자금확인 동의메시지 전송, ③ 인증(계좌접근 동의), ④ 카드기반 지급서비스 이용, ⑤자금확인, ⑥ 동의에 대한 정보 요청의 순이다. 하지만, 이 절차는 선택적(optional) 준수사항이라고 한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91/224쪽].
8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9. 12), 위의 조사자료, 193-194/224쪽.

입하였다. 지급결제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17가지의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청인 FCA는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다만, 권한 부여가 우리나라의 지정에 해당하는지, 인가 내지 허가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는 우리나라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지급거래의 청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처럼 굳이 외부청산에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 스스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에 따른 위험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받을 내용에 대해서도 고객 경험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Ⅳ.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1.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여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디지털 금융종합혁신방안」및「디지털 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 즉,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 EU나 영국도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쟁과 혁신 촉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유사한 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법제도의 개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나 EU 및 영국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EU나 영국을 보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인 고객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마련하고 있는바, 우리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고객 보호 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선정 방법 변경 필요

(1) 임의 지정의 변경 필요

위에서 언급한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안)에 의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이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 제36조의 4 제1항에서 "· · · · · ·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고자 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지정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하겠다. 반면 EU나 영국의 경우 지급결제사업자(payment Institution)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a legal person that has been granted authorisation)일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미 언급하였지만, "granted authorisation"이 인가를 의미하는지 허가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생각건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은 디지털 금융 관련 비은행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이용자인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안에 의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대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진출하고자 하여도 지정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의 지정'을 진입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나 영국의 경우 '권한부여'로 되어 있어 인가인지 허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 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현행 은행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인가'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등록,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허가, 대금결제업 및 결제대행업의 경우 등록 등으로 되어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특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발급 및 보유가 가능하고, 전자금이체, 대금결제업 및 결제대행업 등 은행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가'사항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지정요건의 구체화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즉,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② 2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③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하려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그 밖에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개정안 제36조의 4 제1항 · 제2항). 반면 EU나 영국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SD II Article 5조에서 구체적으로 17가지의 신청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건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지정요건을 인가요건으로 변경하면서 다소 추상적인 위의 4가지의 요건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의 ④에 "그 밖에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위험관리 능력 등"으로 되어 있어 세부사항의 열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EU의 PSD II의 지급결제사업자의 신청 요건을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기존 금융업자와의 차등 규제의 재검토 필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지급결제계좌의 개설이 가능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자금이체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대금결제업 관련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개인결제한도 및 후불결제업 총제공한도[82],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대부나 융자 금지 등의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였다.[83]

구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은행
적용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	은행법 등
최자자본금	200억원	250억원	1,000억원

82)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김세화, "네이버 · 카카오페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선불충전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IT TIMES」, 2020. 7. 27,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253(방문일자 : 2020. 7. 20)].

83) 양기진, 앞의 글, 162-3쪽.

구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은행
규제사항	- 금융위 지정 - 자금세탁방지법/금융실명법 적용	- 금융위 인가 - 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법 적용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적용	
특혜사항	- 모든 전자금융업 영위 (계좌개설/금융결제망 참가/대금결제한도 등)	-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특례(34% 이내)	-
고객보호	- 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적용 제외 -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율[84] - 회생시 충전금 반환 불완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예금자보호법 적용	
계좌개설	인터넷/모바일에 의한 개설		원칙상 방문
이자지급	불가/리워드 제공 가능	이자지급	
대출여부	원칙상 불가(간편결제/후불결제 가능)	가능	
겸영업무	외국환/후불결제/신용정보업	외국환/후불결제/신용정보업 등	

(양기진, 앞의 글, 162-163쪽 표 재인용)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과 비교하여 이자지급 여부 및 대출 여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은행 업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 및 건전성 규제 등에 있어서 은행과 차등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반면 영국은 지급결제사업자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때 시스템의 적격성 요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급결제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개설 허용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FCA나 PSP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빅테크가 은행업에 종사할 경우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행위를 통한 빅테크와 규제되는 금융회사 간의 규제 공백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EU 또한 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아닌 업무로 인하여 지급결제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당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각건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를 보면, 은행과 거의 동일 내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와 건전성 판단에 있어서 은행과 달리 취급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도 없다. 물론 이자지급이나 대출여부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고 차등 규제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영국처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새도우 뱅킹 행위를 통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갭을 줄이고자 한 점, 글로벌 IT 강자들(구글, 아마존, 애

84) 네이버페이 1.65%, 카카오페이 2.42%, 신용카드 1.40% 등과 비교하여 크게 상회하는 등 현행 금융회사보다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빅테크의 수익구조가 존재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한다[양기진, 위의 글, 163쪽].

플, 알리바바 등)의 ○○PAY 서비스가 기존 금융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외부청산의무와 이용자의 보호의 문제 재검토 필요

(1) 외부청산제도의 재검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내부·외부거래를 불문하고 외부청산시스템에 의한 청산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85] 그 이유는 이용자예탁금을 보호하고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86] 하지만, 이러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예탁금 보호와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EU의 경우는 지급결제서비스사업자에게 외부청산을 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스스로 전자지급결제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급결제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설명(PSD II Article 5 1.(d)), 거버넌스 배치, 통제 메커니즘 및 절차가 비례적이고 적절하며 건전하며 적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의 거버넌스 배치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행정, 위험 관리 및 회계 절차를 포함)(같은 조 1.(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및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완화조치와 통제 메커니즘을 갖춘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PSD II Article 95. 1.).

생각건대, 이용자 예탁금 보호와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 향상의 취지의 실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용을 들여 외부청산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EU나 영국처럼 예탁자 보호 및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 보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자율에 따라 청산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이 이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감시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본다.

(2)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재검토

위의 외부청산의무와 관련하여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금융소비

85) 외부청산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결제망)이 예정되어 있다[양기진, 위의 글, 169쪽].
86) 양기진, 위의 글, 172쪽.

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에는 그동안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고 있다. 입법취지는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정보가 집적될 수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87] 이에 대하여 EU나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을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생각건대, 전자지급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은 이용자의 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보다 이용자의 예탁금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EU나 영국의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용자의 동의 하에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정보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맺는 말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를 미국의 Paypal, 중국의 Alipay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지급 플랫폼으로 양성하고자 2020년 11월 27일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대상과 관련하여 4가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둘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

87) 양기진, 위의 글, 165쪽.

될 경우 은행 등과 비교하여 차등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외부청산의무와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전자지급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EU 및 영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하여 본 결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임의지정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인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가요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4가지 지정 요건을 EU의 지급결제사업자가 되기 위한 17가지 신청요건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가 은행과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차등하여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영국은 새도우 빙킹 행위를 통한 빅테크가 은행업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본다. 셋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외부청산의무와 관련하여 외부청산을 하더라도 과연 그 의미가 클 것인지는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EU나 영국의 경우도 내부청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내부청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EU나 영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을 두어 내부청산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내부청산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위험관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논문투고일 : 2022. 07. 22, 논문심사일 : 2022. 08. 03, 게재확정일 : 2022. 08. 23

▌참고문헌

김세화, “네이버·카카오페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선불충전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IT TIMES」, 2020. 7. 27,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253

김지혜, “쉽게 결제해야 쉽게 산다 . . . 마이페이먼트의 등장”, 「전자신문」, 2021. 9. 15, https://m.etnews.com/20210909000266

김현희, “종합지급결제사업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 논의 . . . 카드사 반발”, 「e대한경제」, 2021. 9. 6,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021521108320818

금융위원회, “[알기쉬운 핀테크] 금융권 Open API”, 「보도자료」 2019. 2. 22, 6쪽,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3

박이락,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금융시스템 리뷰」,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4. 7

서정호, “종합지급업 도입과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제29권 제23호, 한국금융연구원, 2020. 11.21-12.04

양기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쟁점 분석”,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2021. 8

이보미, “PSD II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금융브리프」 제29권 8호, 2020. 4.4-4.17

이장준, “[전금법 개정안 명암] 핀테크는 되고 카드사는 안된다? 이중잣대 ‘잡음’”, 「더벨」, 2020. 8. 5,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7311428018840101191

이효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거래 안정 해칠 것”, 「아시아경제」, 2021. 4. 2,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117104061409

오성근, “영국법제상 결제서비스에 관한 규칙 및 검사·감독-전자화폐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1호, 금융감독원, 2020. 4

유미숙(담당과장),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결제계좌에 대한 유럽연합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2020. 12. 8

유영선·강규희,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2019. 10

윤관석 의원 외 11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55)(이하 전자금융거래법안)”(20. 11. 27 발의), 2020. 11. 27

조동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결제계좌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149호, 국회도서관, 2020. 12. 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9. 1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지급결제 조사자료」, 2020. 9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30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payment systems in the UK(2014.11), https://www.fca.org.uk/publication/other/psr-cp14-1-cp-a-new-regulatory-framework-for-payment-systems-in-the-uk.pdf

Code of Conduct for Indirect Access Providers(2015. 8), pp. 3-4, https://www.accesstopaymentsystems.co.uk/sites/default/files/Code%20of%20Conduct%20for%20Indirect%20Access%20Providers%201%200%20(Interim).pdf

DIRECTIVE 2007/6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7L0064&from=EN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L2366&from=EN

FCA, The Payment Accounts Regulations 2015 – Feedback on CP 16/7, Final Handbook changes and finalised guidance, August 2016, p. 6(1.9), https://www.fca.org.uk/publication/policy/ps16-20.pdf

General directions on gener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participants’ relationships with the Payment Systems Regulator, access to, and governance of, regulated payment systems(2015. 3. 18) and modified some provisions(2016. 5), psr-general-directions-may-2016.pdf

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 2(Interpretation), https://www.shearman.com/-/media/Files/Services/Brexit-Legislation/Rebrand/Publication-Version---SFR---1---25022019.pdf?la=en&hash=2C5F6AE9CF8B81989E3F0788B5B8C25BA812918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9L0110&from=EN, 2022. 7. 2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L0036&from=EN, 2022. 7. 20

https://newsroom.koscom.co.kr/3898, 2022. 7. 20
https://www.eba.europa.eu/regulation-and-policy/single-rulebook/interactive-single-rulebook/504, 2022. 7. 20
https://www.gov.uk/eu-eea, 2022. 7. 20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9934, 2022. 7. 2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3/33/contents/enacted, 2022. 7. 20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2038/contents/made, 2022. 7. 20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7/752/contents/made, 2022. 7. 20
https://www.privatebanking.hsbc.com/about-us/financial-regulations/payment-accounts-directive/, 2022. 7. 20

▮ Abstract

Legal Issues on Introduction and Practical use of th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Institution

Koh, Jae Jong*

On November 27, 2020,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as prepared. This amendment Bill included the several elements about ①the introduction and Practical use of My Payment and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system to promote digital innovative services, ②the integr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sector, ③the expansion of business scope such as small post-payment, and ④ open banking and digital liquidation system. Among the above factors, I would like to examine som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institution

The review method is as follows. First,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vice institution under the above Amendment Bill. Next, I would like to compare and review the legal systems of EU and UK. Finally, I would like to suggest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is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s to revitalize this system when introduc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ollowing points. First,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th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institui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voluntary designation to 'authorization' like the banking.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artially expand the four designation elements of the above amendment Bill and present them in detail. Second, since the rules of th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instituion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and Police, Sunmoon University.

is almost similar to that of the bank, it is not necessary to regulate it differently from the bank. Third,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conduct internal liquidation in relation to the external liquidation obligation of that service instituion. Finally, it is mandatory to provide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 information to the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 clearing agency without the consent of the customer, but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obtain their consent for customer protection. Also,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at information to provide.

• Key Words digital financ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institution,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ayment and settlement, payment services directive Ⅱ, payment account